
Policy and Law Report _Vol.16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1~ 11.27) -

November 2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u>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함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장터, 앱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됨 < 디지털콘텐츠 (중개)표준약관 관련 주요 관계 법령 반영 현황 > <table><tr><th>구 분</th><th>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th></tr><tr><td>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td><td> •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소비자’, 「콘텐츠산업법」의 ‘콘텐츠’ 등 정의 규정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의 수신 및 수신거절, 정보의 삭제요청,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 반영 • 「전자상거래법」의 계약서 교부의무 및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재화 등의 공급,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청약철회 등 규정 반영 </td></tr><tr><td>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td><td>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열린시장(오픈마켓)을 앱장터(마켓)로 변경, 앱장터 사업자,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의 규정 등 반영 • 「저작권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의 귀속 규정 등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규정 등 반영 </td></tr></table>	구 분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소비자’, 「콘텐츠산업법」의 ‘콘텐츠’ 등 정의 규정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의 수신 및 수신거절, 정보의 삭제요청,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 반영 • 「전자상거래법」의 계약서 교부의무 및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재화 등의 공급,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청약철회 등 규정 반영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열린시장(오픈마켓)을 앱장터(마켓)로 변경, 앱장터 사업자,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의 규정 등 반영 • 「저작권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의 귀속 규정 등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규정 등 반영	2022-11-22
구 분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소비자’, 「콘텐츠산업법」의 ‘콘텐츠’ 등 정의 규정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의 수신 및 수신거절, 정보의 삭제요청,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 반영 • 「전자상거래법」의 계약서 교부의무 및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재화 등의 공급,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청약철회 등 규정 반영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열린시장(오픈마켓)을 앱장터(마켓)로 변경, 앱장터 사업자,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의 규정 등 반영 • 「저작권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의 귀속 규정 등 반영 • 「정보통신망법」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규정 등 반영							
금융위원회	• <u>「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u>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주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결과로 디지털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기로 함 *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토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 제고	2022-11-21						

부처	내용	일시
	②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他 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③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행정 개선	
	•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2.11.23일 기준, 온투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업체는 49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舊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의 필요 요구 ②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개인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 요청 * 금융기관의 P2P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불확실성 등 – 또한,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함 ③ 참석한 업체들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밝힘 –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	2022-11-23

부처	내용	일시
	•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2.4.14.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②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 ③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 ④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2022-11-2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11.21. 시행)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에너지원에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의 표)	2022-11-21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1.22. 시행)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건협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22조제2항제4호, 제22조제3항제1호, 제22조제4항 등)	2022-11-22
국토 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11.21. 시행)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차로 유지기능 및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별표 27)	2022-11-2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안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계획서,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 재지정을 위한 지정시 제출 계획 이행여부, 업무정지 여부, 지정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절차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안 제23조의5) - 위반행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기준 구체화, 행정처분 후 관보 공고 등 절차 ③ 권한의 위탁 (안 제33조의4)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 ※ 의견 제시기간 : 11/25(금)~2023/1/5(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로 제출	2022-11-25
	•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u>」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청소년 보호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준수사항 규정 ②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안 제15조의4) - 사업자 준수사항,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 조치 등 자체등급분류업무 수행 적정성을 대상 연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매년 평가	2022-11-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친권자 등의 시청지도수단 제공 (안 제15조의5) - 청소년 적합 등급·내용정보 설정 가능, 최근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가입자 요청시 이용내역 제공 등 친권자 시청지도수단 제공 ※ 의견 제시기간 : 11/25(금)~2023/1/5(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로 제출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활용원료 사용시 의무량 감경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원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인정 기준 정의 (안 제14조제2항 신설)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에 관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임을 구체화 ※ 의견 제시기간 : 11/22(화)~12/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11-2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하고,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 6. 29.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입법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오류사항 정정 (안 제5조와 제6조) ②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 합리화 (안 별표15)	2022-11-2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시 최대배출기준이 물환경보전법상 “가”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에 별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악영향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시설개선투자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나”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합리화함 - 위 개선을 통해 환경의 질을 담보하되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시설개선 투자를 효율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③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 방류시설의 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자의 법령 준수상 혼란 방지 (안 별표15) ※ 의견 제시기간 : 11/22(화)~12/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로 제출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의 명확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신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② 재활용의무량 감경 절차 등 구체화 (안 제4조, 안 제5조 신설) - 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의 산정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 ※ 의견 제시기간 : 11/23(수)~12/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11-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 (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②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의견 제시기간 : 11/25(금)~12/1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11-25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 추가 (안 제6조 개정) - 스마트건설 관련 산·학·연·관 참여 법적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책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1/25(금)~12/8(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제출	2022-11-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22. 5.~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22. 1.~9.)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11.~'22. 2. 등록완료물질,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종전 등록대상 기존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 동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②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62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41종, 기존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15-45) - 별표 제2호(기존 화학물질) 총 21종*, 기존물질 고유번호 3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7종 개정 포함 * 고유번호 2022-207의 경우 유독물질 고유번호 및 유해성이 개정되어 1종으로 산정 ③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 의견 제시기간 : 11/22(화)~12/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로 제출	2022-11-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u>」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미국의 재무부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및 연방예금보험공사 ‘DGP(Debt Guarantee Program)’,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EU의 ‘예방적 공적지원’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음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안 제24조의5 신설)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②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 (안 제39조의4 신설) -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과의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③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안 제39조의7 신설)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022-1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량일부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 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 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둌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	2022-11-18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 금융업 일부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뿐,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핀테크 기업의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통한 대출사업 등을 영위하며 사실상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규제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의 공익성 이유를 임원의 자격 역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제51조)	2022-11-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22-11-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면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5 신설 및 제7조제1항)	
기획재정 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등 10인)」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째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연장된 기간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극심한 경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2022-11-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3인)」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2022-11-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2022-11-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0 신설)	2022-11-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편리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는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 (안 제50조제5항) - 제50조제5항에 명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명시된 각 호의 내용 중 “조치”를 “행위”로 변경	2022-11-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 동의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0조제7항) - 제50조제3항에 따른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함 ③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정비 (안 제50조의8, 제72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신설, 제73조제3호 삭제,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 제50조의8에 명시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의 의미를 명확히 함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공 거부 등 의무 해태 시 처벌 강화 (안 제76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의4호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의원 등 11인)」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 반면, 이러한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와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회복의 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디지털포용 사회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022-11-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 (안 제2조) ③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④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⑤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2%, 연평균(’16년 ’20년) 4.9%가 증가하여 전체 산업(1.3%)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는 고성장 산업이며, 수출증가율 18.7%(전체산업 평균 0.9%의 21배), 청년 고용(청년층 종사자 57%) 등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1%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문화상품사업자간 거래 및 계약에서 부당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문화상품의 수령 또는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여 차별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1인 창작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프리랜서의 87.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함 이처럼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유통방식의 복잡·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구조적 한계와 공정한 유통환경에 대한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었으나,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2-11-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국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문화상품사업자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문화상품의 창작·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사업자 간의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고, 문화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문화산업상생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함 (안 제5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 (안 제10조) ⑤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⑥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등 22인)」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음.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확보는 에너지·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임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 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렵고, 전력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원전은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의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반면, 선진소형원자로의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조립식 설계를 통한 유연한 용량 증대,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수소·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 대형원전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처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핵연료를 교체 주기를 늘리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중임. 이 가운데 북미지역은 민간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증·상용화 사업을 유치하며, 중앙정부가 재정·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면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2022-1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함. 우수한 기업들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참여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통해 상용화로 이어질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어야 함. 기업의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에 중간 보고하도록 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③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④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⑤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⑥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5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상시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제3항제5호 및 제5항 신설, 제31조제2항 신설, 부칙 제2조 삭제)	2022-11-18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대기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하였음	2022-11-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의 청정수소 생산량 등 신고사항을 확대함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25조의3제1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 청정수소의 국내 공급량에 대한 공급증명서를 발급·관리하는 한편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증명서의 시장거래, 청정수소 판매·사용실적 총량 등을 명시함 (안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신설, 안 제 25조의5제1항 및 제3항)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업무를 명시함 (안 제25조의4제2항) ④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공급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함 (안 제25조의4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각각 신설) ⑤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로 수정함 (안 제25조의 8제1항) ⑥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안 제54조 제1항제2호의4 신설) ⑦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 조제2항) ⑧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안 제 57조제1호의3 신설) 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명시함 (안 제5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u> (김한정의원 등 15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양성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처리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안 제19조제4항) ② 인·허가 처리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 (안 제19조제5항) ③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27조의2) ④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⑤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2022-11-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30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 및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내의 계약사항 등이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 (안 제4조) ④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안 제7조) ⑤ 사업자는 성(性)·국적·신앙·혼인상 지위·사회적 신분·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안 제8조)	2022-11-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조건을 주장하지 못함 (안 제9조) ⑦ 사업자는 임신 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안 제14조) ⑧ 사업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일하는 사람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함 (안 제15조) ⑨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체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안 제16조) ⑩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체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안 제17조)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안 제21조) ⑫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안 제22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2/1(목)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심의	
	12/2(금)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 안건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1/30(수)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발간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11/28(월)	소셜시그널 제30호 서비스 - 주택 거래 절벽	
	11/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9호 발간 -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11/30(수)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11/28(월)	「이슈와 논점」 발간 -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 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11/28(월) 14:00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 - 독일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	유튜브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11/28(월) 15:00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법사위	11/28(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11/28(월) 10: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9(화) 10: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9(화) 14:00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
교육위	11/28(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과방위	11/29(화) 14:00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법안심사소위	11/22(화) 10:00	조세소위	- 법안 의결
외통위	11/29(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행안위	11/28(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산자위	11/29(화) 10:00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 심사
	11/30(수)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의결
	12/2(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복지위	12/1(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환노위	11/29(화)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30(수) 10:0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 의결
	12/1(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8(월) 10:00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학용·김병욱·정희용·안 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8(월) 10:00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 -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고영인·김정호·이원택·정 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8(월) 13:3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정희용 의원실, COP27 대통령 특사단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8(월) 13:30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 -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미래전략	한무경·김경만 의원실, 한 국여성벤처협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9(화) 14:00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우원식·김성환· 고용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9(화) 14: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정책포럼	이용선 의원실, 국회환경포럼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9(화) 15:00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	박상혁 의원실, 국회 법제실	대곶면 주민 자치센터
11/30(수) 10:00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 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이인영·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30(수) 15:00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 -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이주환·전용기 의원실, 기후변화센터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목) 10:00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 미·중 전략경쟁시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김상희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12/2(금) 07:30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확대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 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22(화)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3호 발간 -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경제안보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	
	11/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9호 발간 -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	
	11/24(목)	「현안, 외국에선?」 제48호 발간 - 패스트패션 퇴출: 지속가능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입법조사처	11/23(수)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	
	11/24(목)	「이슈와 논점」 발간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1(월) 14:00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오기형·윤창현 의원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21(월) 14:00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22(화) 07:30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양이원영 의원실,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23(수) 13:30	카카오 먹통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국회정책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4(목) 09:30	2022년 전기차리더스포럼 - 202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	권성동·이주환 의원실, 국 회 모빌리티포럼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4(목) 10:00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 회 포럼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